

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여,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활한 안전관리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(안 제2조)
 - 현행 인적·기반재난을 “사회재난”으로 통합
 - 인적·기반재난, 기반체계, 기반보호총괄반 등의 용어 폐지
-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상세화(안 제3조)
 -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 총괄·조정, 재난의 상황관리 등 응급조치, 재난의 수습활동, 재난의 예·경보 발령 등으로 구체화

- 재난수습 주관부서 지정 신설(안 제4조)
 -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따라 49개의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
- 자연·사회재난별 실무반 편성기준을 단계별로 구분(안 제6조)
 - 현행 실·국·본부 단위의 실무반을 13개 협업기능별로 편성하여 임무·역할 부여 등 신설(별표 3~7)
- 상황판단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상세화(안 제7조)
 -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 협의사항, 개최권자 등을 구체화
- 현장상황관리관 임무 및 시·군 대책본부 지휘 관련 사항 정비(안 제11조~제12조)
- 재난 예·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조항 신설(안 제13조~제14조)
- 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”의 구성·운영, 회의소집 및 심의 사항 등 신설(안 제17조~제18조)
- 사회재난의 피해지원기준안 신설(안 제19조)
 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안 신설
- 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규정을 신설(안 제21조)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,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상세화, 재난수습 주관부

서를 지정, 재난 예·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
조항을 신설하는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
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
정조례안 1부. 끝.